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3가단551470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

담당변호사 윤화섭

피고1. A

2.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2024. 9. 27.

판결 선고2024. 11. 8.

주 문

-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- 피고 A은 원고에게 67,797,331원 및 그 중 67,797,274원에 대하여 2023. 12. 13.부터 2024. 3. 28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들 사이의 2023. 5. 24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3. 5. 24. 접수 제13576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,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(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다296943 판결 등 참조)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고,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수익자가 근저당권자로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, 피고 B이 그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그렇다면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. 또한 원고는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

이익도 없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.

라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.

판사진정화

별지